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11
----------	-------

발의연월일 : 2026. 6. 12.

발 의 자 : 채현일 · 이해식 · 이재강
김병주 · 박지원 · 양부남
김현정 · 정진욱 · 한민수
이재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그 가족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특수관계사업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0% 미만의 지분 소유를 통해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로 보도록 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 본인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그 수의계약에 대한 체결사실 공개 시 고위공직자와 사적이해관계자의 관계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수의계약 관련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바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을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사적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신고 등)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수의계약의 계약 상대자와 해당 고위공직자와의 관계 등을 소속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 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신설>

와의 관계 등을 소속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

제2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

<p>5.·6. (생략) ③·④ (생략)</p>	<p><u>여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가</u> <u>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u> <u>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고위공</u> <u>직자</u></p> <p>5.·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p>
--------------------------------	---